

# 사회복지법인 룬비니 정관



사회복지법인 룬비니

# 정 관 관 리 대 장

| 순번 | 허가일자                             | 구분 | 이사회<br>의결일               | 주요내용   | 주무관청             |
|----|----------------------------------|----|--------------------------|--|------------------|
| 1  | 경기도 아동복지과<br>-2345(1990.08.17.)  | 제정 | -                        | 설립허가: 보건사회부장관<br>(재발급- 경기도지사 제738호: 1990. 8. 17.)<br>명칭변경: 사회복지법인 롬비니(제8장제37조)<br>사업종류: 보육시설 설치·운영(영유아보육법)         | 보건사회부<br>(경기도지사) |
| 2  | 경기도<br>(1995. 12. 13.)           | 개정 | -                        | 법인명칭 변경(2조)<br>-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롬비니   | 경기도지사            |
| 3  | 경기도<br>(2000.08.30.)             | 개정 | -                        | 목적사업 변경(1조) 및 분사무소 설치근거(3조)<br>사업종류 확대(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br>-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 및 지원사업(노인·보육<br>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 기타 목적사업(4조) | 경기도지사            |
| 4  | 부천시 여성복지과<br>-3027(2005.02.28.)  | 개정 | 2005.02.14.<br>제2005-2차  | 기본재산 증가(정왕동 1800-9)<br>시흥장복 건물 2,556.99㎡ (2,356,447천원)   | 부천시장             |
| 5  | 부천시 가정복지과<br>-24817(2006.12.27.) | 개정 | 2006.12.16.<br>제2006-17차 | 기본재산 교환 승인<br>(원미동 184-106→ 184-22, 177-138→ 177-120)  | 부천시장             |
| 6  | 부천시 가정복지과<br>-18585(2007.11.01.) | 개정 | 2007.10.20.<br>제2007-5차  | 주사무소 이전(원미동 184-106 → 184-22)<br>분사무소 설치(시흥 정왕동 1800-9)  | 부천시장             |
| 7  | 부천시 가정복지과<br>-43864(2009.12.31.) | 개정 | 2009.12.28.<br>제124차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영<br>(16조제2항: 임원 승인 후 취임→ 즉시 보고)   | 부천시장             |
| 8  | 부천시 가정복지과<br>-18860(2010.04.30.) | 개정 | 2009.10.08.<br>제122차     | 기본재산 증가(서천 무상증여: 임동화→ 법인)<br>(시흥 토지, 김포 토지/건물, 서천 토지/건물)   | 부천시장             |
| 9  | 부천시 가족여성과<br>-5181(2011.04.01.)  | 개정 | 2011.03.24.<br>제137차     | 기본재산 증가<br>(김포 가연마을 재산평가액 반영)  | 부천시장             |
| 10 | 부천시 가족여성과<br>-12832(2012.04.10.) | 개정 | 2012.03.22.<br>제149차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br>규칙 개정 반영(12조 본문, 15조2호, 16조2항,<br>17조1항~3항, 18조3항, 25조2항)                                | 부천시장             |
| 11 | 부천시 가족여성과<br>-15697(2012.05.03.) | 개정 | 2012.04.05.<br>제151차     | 분사무소 설치<br>(김포 월곶면 고막리 382)  | 부천시장             |
| 12 | 부천시 가족여성과<br>-10233(2013.03.15.) | 개정 | 2013.02.15.<br>제162회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 반영<br>(11조: 이사회 의결, 기한 1개월→ 5일)  | 부천시장             |
| 13 | 부천시 가족여성과<br>-40177(2013.11.04.) | 개정 | 2013.10.30.<br>제165회     | 분사무소 설치<br>(3조2항3호: 서울 종로 삼봉로 81, 744호)  | 부천시장             |
| 14 | 부천시 보육아동과<br>-11007(2014.10.01.) | 개정 | 2014.09.16.<br>제171회     | 법인약칭 추가<br>(2조: 사회복지법인 롬비니)  | 부천시장             |
| 15 | 부천시 보육아동과<br>-38262(2015.09.07.) | 개정 | 2015.08.27.<br>제178회     | 법인약칭 추가<br>(2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   | 부천시장             |
| 16 | 부천시 보육아동과<br>-48599(2015.11.09.) | 개정 | 2015.11.05.<br>제180회     | 서울분사무소 이전(종로구 계동길 115-6)<br>(15조2호: 이사정수 변경 7인→ 8인)  | 부천시장             |

# 정 관 관 리 대 장

| 순번 | 허가일자   | 구분 | 이사회<br>의결일           | 주요내용   | 주무관청              |
|----|--|----|----------------------|--|-------------------|
| 17 | 경기도 보육정책과<br>-19112(2020. 10. 15.)<br>경기도 허가 제378호<br><br>부천시 보육정책과<br>-23530(2020. 10. 15.) | 개정 | 2020.09.29.<br>제208회 | 법 개정 정비 및 명칭 개정: 3조,<br>- 사업종류 분류 구체화<br><br>명칭명경, 도로명주소로 변경, 법 개정에 따른<br>정관 일괄정비, 수익사업 신설<br>- 2조, 4조1호, 5조~6조, 8조~9조, 11조~12조,<br>16조~18조, 182조의2~18조의3(신설), 19조,<br>24조, 26조, 27조(삭제), 29조, 4장의2(신설),<br>29조의2~29조의5(신설), 35조, 36조, 38조(신설) | 경기도지사<br><br>부천시장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21 |  |    |                      |  |                   |
| 22 |  |    |                      |  |                   |
| 23 |  |    |                      |  |                   |
| 24 |  |    |                      |  |                   |
| 25 |  |    |                      |  |                   |
| 26 |  |    |                      |  |                   |
| 27 |  |    |                      |  |                   |
| 28 |  |    |                      |  |                   |
| 29 |  |    |                      |  |                   |
| 30 |  |    |                      |  |                   |

# 정 관

**사회복지법인 룬비니**

# 목 차

1. 제1장 총 칙
2. 제2장 자산 및 회계
3. 제3장 임 원
4. 제4장 이사회
5. 제4장의2 수익사업
6. 제5장 사무조직 및 운영
7. 제6장 정관변경 및 해산
8. 제7장 공고방법
9. 제8장 보 칙

# 사회복지법인 룸비니 정관

( 제정) 1990. 08. 17. 경기도지사  
(일부개정) 1995. 12. 13. 경기도지사  
(일부개정) 2000. 08. 30. 경기도지사  
(일부개정) 2007. 11. 01. 부천시장  
(일부개정) 2009. 12. 31. 부천시장  
(일부개정) 2012. 04. 10. 부천시장  
(일부개정) 2012. 05. 03. 부천시장  
(일부개정) 2013. 03. 15. 부천시장  
(일부개정) 2013. 11. 04. 부천시장  
(일부개정) 2014. 10. 01. 부천시장  
(일부개정) 2015. 09. 07. 부천시장  
(일부개정) 2015. 11. 09. 부천시장  
(일부개정) 2020. 10. 15. 경기도지사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종지·종통을 받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적 기능을 촉진·회복하여 사회적 통합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30.>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룸비니(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명칭개정 1995. 12. 13. 약칭신설 2014. 10. 1. 약칭신설 2015. 9. 7. 명칭개정 2020. 10. 15.]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68번가길 4(원미동)’에 둔다. <도로명 주소로 개정 2020. 10. 15.>

[주사무소 이전 2007. 11. 1.]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7. 11. 1., 2012. 5. 3., 2013. 11. 4., 2015. 11. 9., 도로명 주소로 개정 2020. 10. 15.>

1. 시흥시 분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27-1(정왕동)’에 둔다. [분사무소 설치 2007. 11. 1.]

2. 김포시 분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37번길 76-25’에 둔다. [분사무소 설치 2012. 5. 3.]

3. 서울시 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115-6(계동)’에 둔다. [분사무소 설치 2013. 11. 4. 분사무소 이전 2015. 11. 9.]  
[본조신설 2000. 8. 30.]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0. 8. 30., 2020. 10. 15.>

1. 사회복지시설·단체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 1-1. 노인복지사업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열거한 노인복지시설
  - 1-2. 보육아동사업 : 「영육아보육법」 제10조에 열거한 어린이집
  - 1-3.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열거한 장애인복지시설
  - 1-4.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열거한 청소년복지시설
  - 1-5. 지역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의한 사회복지관
  - 1-6. 가족복지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그 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자산 및 회계

### 제1절 자산

**제5조(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10. 15.>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 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1. [별표 1]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2. [별표 2] 현재 기본재산 목록
3. 부동산
4.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신설 2020. 10. 15.>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담보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10. 15.>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0. 15.>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전 제2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0. 10. 15.>]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0. 15.>

② 법인 일반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기 집행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5.>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5., 2020. 10. 15.>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법인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 2020. 10. 15.>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관련법에 의한 추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재적승려 및 신도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5. 11. 9.>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8인 (대표이사 포함)
3.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8인 중 2인 이상은 사·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12. 4. 10., 2020. 10. 15.>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20. 10. 15.>

④ 감사 중 1인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당시 법인의 직전 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른 세입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익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의 감사인으로 선임한다. <신설 2020. 10. 15.>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20. 10. 15.>

②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20. 10. 15.>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10. 15.>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제18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20. 10. 15.]

**제18조의3(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본조신설 2020. 10. 15.]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15.>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0. 15.>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0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에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1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제4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10. 15.>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 4. 10.>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제26조(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20. 10. 15.>

③ 이사회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신설 2020. 10. 15.>

**제27조** 삭제 <2020. 10. 15.>

**제28조(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0. 15.>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제29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 제4장의2 수익사업 <신설 2020. 10. 15.>

**제29조2(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하고, 회계처리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5.]

**제29조3(수익의 처분 및 관리)** 법인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10. 15.]

**제29조의4(후원회)**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③ 후원회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은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15.]

**제29조의5(후원금의 관리)** ① 법인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범위,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사용용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5.]

## 제5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0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1조(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2조(정관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7장 공고방법

**제35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5.>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장 보칙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5.>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규정의 제·개정)**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5.]

**부 칙** <경기도 아동복지과-2345: 1990. 8.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경기도 : 1995. 12. 1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경기도 : 2000. 8. 3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부천시 가정복지과-18585: 2007. 11. 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부천시 가정복지과-43864: 2009. 12. 3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부천시 가족여성과-12832: 2012. 4. 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부천시 가족여성과-15697: 2012. 5. 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부천시 가족여성과-10233: 2013. 3. 1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부천시 가족여성과-40177: 2013. 11. 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부천시 보육아동과-11007: 2014. 10. 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부천시 보육아동과-38262: 2015. 9. 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부천시 보육아동과-48599: 2015. 11. 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4와 같다.

1.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부.
2. 별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부.
3. 별표 3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부.
4. 별표 4 현재 임원의 명단 1부.
5. 별표 5 현재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6. 별표 6 세부사업내용 1부.

**부 칙** <경기도 보육정책과-19112: 2020. 10. 15. 경기도 허가 제378호, 부천시 보육정책과-23530: 2020. 10.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현재 기본재산 목록, 설립당시의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 내지 [별표 4] 과 같다.

1. [별표 3] 설립당시 임원명단
2. [별표 4] 법인이 사용할 인장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임원의 선임, 예산편성과 결산, 사업계획 수립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장(법령 등의 우선적용)** 관련법령 등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 상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제5조제2항 관련)**

| 구분 | 소 재 지                         | 규 모(㎡) | 평가가액(천원) | 출연자   | 비 고        |
|----|-------------------------------|--------|----------|-------|------------|
| 현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br>원미2동 184-106번지 | 716.0  | 164,680  | 임 학 규 | 목 적<br>사업용 |
| 현금 |                               |        | 85,000   | 임 학 규 | 목 적<br>사업용 |

**현재 기본재산 목록(제5조제2항 관련)**

| 구분 | 소재지   | 규모(㎡)   | 평가가액(천원)  | 출연자   | 비고      |         |
|----|---|---|-----------|-------|---------|---------|
| 합계 |   |   | 5,050,617 |       |         |         |
| 현물 |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68번가길 12-2(원미동) (대지)   | 105.0   | 210,000   | 임 학 규 | 목 적 사업용 |         |
|    |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68번가길 12-2(원미동) (건물)<br>- 1층<br>- 2층                             | 122.58<br>61.29<br>61.29                                  |           |       |         |         |
|    |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68번가길 4(원미동) (건물)<br>- 1층<br>- 2층<br>- 3층<br>- 4층                | 657.35<br>187.49<br>178.34<br>151.46<br>140.06            | 968,791   |       |         |         |
|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27-1(정왕동) (대지)  | 2,168.3   | 3,248,702 |       |         |         |
|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27-1(정왕동) (건물)<br>- 지하1층<br>- 1층<br>- 2층<br>- 3층          | 2,556.99<br>343.26<br>938.59<br>890.32<br>384.82          |           |       |         |         |
|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37번길 76-25 (대지)  | 1,659.0   |           |       |         | 592,483 |
|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37번길 76-25 (건물)<br>- 지하1층<br>- 1층<br>- 2층<br>- 3층<br>- 옥탑 1층 | 1,801.79<br>493.87<br>653.96<br>653.96<br>265.53<br>54.13 |           |       |         |         |
|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230 (대지)   | 264.0   | 30,641    |       |         |         |
|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230 (건물)<br>- 1층<br>- 2층                                   | 62.74<br>35.18<br>27.56                                   |           |       |         |         |

**설립당시 임원(부칙 제2조 관련)**

| 직위   | 임 기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대표이사 | 1990.08.17~<br>1993.08.17.<br>(3년)  | 오 만 근 | 340127-1***** | 경상남도 하동군 하계면 온수리 208                    |
| 상임이사 |                                     | 임 학 규 | 54013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58-3                     |
| 이사   |                                     | 김 낙 양 | 320929-2*****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2동 744-11                   |
| 이사   |                                     | 김 순 희 | 411104-2*****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490-2                   |
| 이사   |                                     | 왕 정 찬 | 620126-1***** |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2동 814-41                  |
| 감사   | 1990.08.17.~<br>1992.08.16.<br>(2년) | 이 수 철 | 670410-1***** |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2동 산29-12                  |
| 감사   |                                     | 홍 갑 표 | 620310-1***** |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2동 177-20<br>우진아파트 가동 302호 |

**법인이 사용할 인장(부칙 제2조 관련)**

| 직 인 | 사용인감 | 계 인 |
|-----|------|-----|
|     |      |     |